

**청풍만남의광장관광정보센터미활용시설
문화공간운영위탁동의안**

의안 번호	142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03. .

제출자 : 제천시장

1. 제안사유

- 청풍 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의 미활용 시설에 대한 임대(사용 허가)를 통한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 못하고 시설노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,
-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인 만남의광장에 상가는 물론 문화공간 조차 없어 야간에는 너무나 적막한 실정인 바,
- 관광정보센터 미활용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위탁운영함으로써 만남의광장관광지 관광활성화를 기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청풍 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미활용시설 문화공간 위탁관리안

구분	내용	비고
위탁시설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재지 : 제천시 청풍면 교리 147번지 • 건물현황 : 일반철골조 2층/연면적 396.19m²/ 용도: 문화및집회시설 • 위탁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층 107.9m²(32.6평)-문화공간 88.1m²(영상실+창고), 화장실 19.8m² - 2층 113.25m²(34.2평)-전시(휴게)실+화장실 +현관 ※ 시직접운영: 1층 관광안내소(115.7m²), 임대: 특산품판매점(59.34m²) 	
기본방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의회 동의를 받아 문화예술인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• 공개모집을 통한 문화예술인 선정 및 위탁 • 상호 이익 조건 충족 전제(수탁자공모시 조건명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예술인) : 문화활동 공간확보(단, 년2회이상 자체기획행사 조건) (제천시) : 문화예술인유치 관광자원화, 관광객 유입 및 이미지 제고 	
수탁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남의광장 문화공간에서 상시 예술활동을 하면서 년 2회이상 자체기획행사를 할 수 있는 예술인으로 제천시에 상주를 희망하는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	

수탁자모집 및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 및 시청 공고를 통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받아 수탁능력 평가후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 수탁자심사위원회 구성 :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로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심사(심사후 해산)
위탁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년위탁후 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조건(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 19조2항에 따라 행정재산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기간 “5년이내”로 규정)
수탁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익시설인 1층 문화공간 88.1㎡에 한해 위탁료 산정 부과
운영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수익시설포함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과금은 수탁운영자 자부담
운영비보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없음
공제보험 가입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천시-영조물 공제가입(영업배상보험 필요시 수탁자 자체 가입)
문화공간 운영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년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 원칙 ※년간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 검토 후 수탁자 평정에 반영
협약및공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탁자 선정후 위탁협약 별도 체결, 협약서 공증

3.제안근거

-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(제4조제3항)

4.참고자료

-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부.

5.별 입

- 청풍루 문화공간 활용방안 검토 및 운영계획 1부. 끝.

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미활용시설 문화공간 위탁운영방안 검토보고

- 청풍 만남의광장에 소재한 관광정보센터는 2005년 3.7억 원의 건축비를 투자하여 건립된 2층 철골조 건물로 연면적 396.19m²(120평)에 달하는 시설이나
- 1층 관광안내소 와 농특산물판매장을 제외한 1층 영상실, 및 2층 전시실 등은 미사용으로 인한 건물 노후가 가속되고 있는 바,
- 미활용 시설에 대한 문화공간 위탁운영으로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만남의광장 관광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

I. 시설현황

- 위 치 : 제천시 청풍면 교리 147번지(만남의광장 내)
- 연 면 적 : 396.19m²(※건축면적 282.94m²), 지상2층 건물
 - ① 1층 : 282.94m²
 - 영상실, 관광안내소, 화장실, 창고 등 : 223.6m²
 - 특산물판매장(원형) : 59.34m²
 - ② 2층 : 113.25m²
 - 전시장(휴게실) : 113.25m²
- 주요구조 : 일반철골구조 / ○ 주 용 도 : 문화및집회시설
- 투자사업비 : 370백만원 ○ 사용승인 : 2005. 6. 1.

II. 지금까지 운영현황

- 관광안내소(1층)
 - 관광안내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(※문화관광해설사 근무)
 - 기타 주방, 창고 및 화장실은 보조 시설로 사용
- 특산물판매장(1층)
 - 2005년부터 농특산품판매장으로 임대 중(2010.1.1. 차기3년 임대개시)
- 영상실(1층), 전시(휴게실)(2층) : 미사용

▶ 특산물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현황(2005~2012)

임대자	허가기간 (3년간)	허가방법	임대료(년/원)	비고
제천시공예협회 (이택서) ※'06.5.1.포기	2005.8.1 ~2006.4.30 (당초'08.12.31) ※'06.5.1.포기	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 2항 8호에 의거 수의계약	'05 : 2,473,900	
화산동868-1 (박경배)	2007.1.1 ~2009.12.31	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 1항에 의거 일반경쟁입찰	'07 : 2,600,000 '08 : 2,527,540 '09 : 2,628,170	임대면적 59.34m ²
장락동 주공A 206-905(김미영)	2010.1.1 ~2012.12.31	"	'10 : 3,100,000	

▶ 2층 전시(휴게)실에 대한 매점용도 사용수익허가현황

임대자	사용허가기간 (3년간)	허가방법	임대료(년/원)	비고
봉양 미당리 경회 A103-902(고미경) ※'06.7.포기	2005.8.1 ~2006.7.31 (당초'08.7.31) ※'06.7.포기	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 1항에 의거 일반경쟁입찰	'05 : 3,510,000	임대면적 - 60.9m ²

III. 문제점

□ 건물 미사용으로 인한 시설노후 가속화 문제

- 공공사업비 3.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층 철골조 연면적 396.19m²(120평)에 달하는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고,
- 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광안내소, 농특산품판매장, 영상실, 전시(휴게)실 등 다양한 용도의 공간을 배치하였으나,
- 현재 미활용 시설의 활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(사용수익허가)포기로 실제 활성화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음
- 특히, 건물자체가 외형은 우수하나 활용도가 떨어지고, 외부에 노출된 목재 등의 부식으로 인해 시설 노후가 가속화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건물 활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.

□ 만남의광장 문화관광인프라 부재에 따른 침체 문제

- 만남의광장은 관광지로 지정된 관광지구로 2004년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식당, 상가는 물론 문화공간 하나도 없어 관광지인지도 모를 정도로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상황임
- 번지점프장 및 인공암벽장 등이 있으나 관광지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, 특히 수경분수 또는 번지점프장이 운영되지 않는 동절기와 야간에는 너무 적막한 상황임
- 그동안 조각공원 조성 및 야간 경관조명으로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관광객을 잡아두는 데는 한계를 느끼고 있음
- 따라서 관광지조성계획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동절기 및 야간관광활성화가 가능한 대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

IV. 대 책

□ 공연문화공간으로 위탁운영 추진

- 현재 미사용중인 2층 전시(휴게)실 용도를 관리숙소로 변경하고, 1층 영상실을 문화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2층에 문화예술인이 상주하면서 문화공간을 운영토록 문화공간과 관광안내 및 특산물판매장을 완벽히 분리하는 동선형태가 되도록 리모델링한 후,
- 제천에서 문화활동을 하면서 제천정착을 희망하는 이름 있는 문화 예술인을 공모로 선발하여 위탁운영토록 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하고,
- 만남의광장 야외 화장실과 정보센터 간 잔디광장에 야외 소공연장을 조성, 공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향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남의 광장이 주말은 물론 야간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
- 미사용 시설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, 만남의광장이 전국적 문화관광의 명소로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됨

V. 리모델링 계획

□ 기본방침

- 꼭 개선해야할 사항 이외에는 가급적 현행유지
-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방안 강구
- 「관광안내소+농특산물판매소」과 「문화공간+소공연장」 동선분리

□ 사업개요

- 대상 : 1층영상실 및 2층 전시(휴게)실
- 사업기간 : 2010.6월 중(2010.7.15한 완료)
- 사업비 : 약 50백만원 정도
- 내용
 - < 1층 영상실 : 88.1m² >
 - 용도변경 : ①영상실 및 창고→문화공간으로 변경
 - 대수선 : ①영상실 창문2개소 개수→출입문 2개소 및 출입구 계단설치, ②영상실에서 화장실 출입문 출구 마련1개소), ③관광안내소 출입문 폐쇄1개소
 - < 2층 전시(휴게)실 : 113.25m² >
 - 용도변경 : 전시(휴게)실 → 관리숙소로 변경
 - 대수선 : ①1층과의 개활공간 분리벽체 시설설치(11m), ②1층에서 2층출입 계단폐쇄, ③1층에서 2층 출입계단 신설1개소, ④2층배란다 및 통로 현관 마루목재교체 등
 - < 야외 소공연장 조성 : 약 1,000m² >
 - 용도 : 하절기 누구나 공연이 가능토록 대중 인프라 구축
 - 야외무대, 관람석(약 100석 정도), 조명시설 등 조성
- 추진주관 : 제천시(문화광광과)
- ※ 건축법검토 결과 : 관광지로 가능, 관광진흥법 검토결과 : 가능

□ 예산대책

- 시민회관리모델링 사업비 잔여분 50백만원 활용(추가필요시 추경 확보)

VI. 위탁운영계획(안)

□ 위탁방침

- 시의회 동의를 받아 문화예술인의 문화공간으로 활용
- 공개모집을 통한 문화예술인 선정 및 위탁
- 상호 이익 조건 충족 전제(수탁자공모시 조건명시)
 - (예술인) : 문화활동 공간확보(단, 최소문화활동 조건 전제)
 - (제천시) : 문화예술인유치 관광자원화 및 제천 이미지 제고
- 위탁대상 시설물 : 1층영상실 + 2층 전시(휴게)실

□ 법적근거

〈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〉

- 민간위탁사무기준 : 문화공간의 경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경우로 민간위탁 가능 사무
- 의회동의 :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동의 필요
- 수탁기관선정 :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서 제출받아 공개모집 원칙
- 심사위원회구성 :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선정심사 위원회 구성(선정 후 해산)
- 사무처리지원 : 시유재산 및 물품 사용가능, 소요비용 지원가능
- 협약체결 등 :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, 협약이행 등에 대해 포함가능
- 처리상황감사, 지휘감독 등 수탁자 통제권 행사 가능

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〉

- 행정재산위탁관리 : 행정재산관리를 위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할 경우 위탁가능(제19조1항)
- 행정재산의 위탁관리기간 : 5년 이내 가능(제19조2항)

VII. 위탁운영계획[안]

구 분	내 용	비 고
위탁시설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재지 : 제천시 청풍면 교리 147번지 건물현황 : 일반철골조 2층 / 연면적 396.19m² / 용도: 문화및집회시설 위탁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층 107.9m²(32.6평)-문화공간 88.1m²(영상실+창고), 화장실 19.8m² 2층 113.25m²(34.2평)-전시(휴게)실+화장실 +현관 <p>※ 시적접운영: 1층 관광안내소(115.7m²), 임대: 특산품판매점(59.34m²)</p>	
기본방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의회 동의를 받아 문화예술인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공개모집을 통한 문화예술인 선정 및 위탁 상호 이익 조건 충족 전제(수탁자공모시 조건명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예술인) : 문화활동 공간확보(단, 년2회이상 자체기획행사 조건) (제천시) : 문화예술인유치 관광지원화, 관광객 유입 및 이미지 제고 	
수탁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남의 광장 문화공간에서 상시 예술활동을 하면서 년 2회이상 자체기획행사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으로 제천시에 상주를 희망하는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	
수탁자모집 및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 및 시청 공고를 통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받아 수탁능력 평가후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 수탁자심사위원회 구성 :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로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심사(심사후 해산) 	
위탁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년위탁후 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조건.(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 19조2항에 따라 행정재산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기간 “5년이내”로 규정) 	
수탁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의시설인 1층 문화공간 88.1m²에 한해 위탁료 산정 부과 	
운영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수의시설포함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과금은 수탁운영자 자부담 	
운영비보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없음 	
공제보험 가입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천시-영조몰 공제가입(영업배상보험 필요시 수탁자 자체 가입) 	
문화공간 운영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년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 원칙 <p>※년간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 검토 후 수탁자 평정에 반영</p>	
협약및공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탁자 선정후 위탁협약 별도 체결, 협약서 공증 	

□ 일정별 추진계획

- 만남의광장정보센터 문화공간위탁안 확정 : 2010. 2. 19.한
- 민간위탁방안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: 2010. 2. 23.한
- 민간위탁방안 의회승인 : 2010. 3. 20.한
-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: 2010. 4. 15.한
- 민간위탁기관 공모신청 접수완료 : 2010. 5. 26.한
- 위탁기관선정심사위 구성, 심의완료. : 2010. 6. 10.한
- 위수탁계약 체결 : 2010. 7. 13.한
- 시설 리모델링 완료 및 입주 : 2010. 7. 14.한
- 문화공간 운영 : 2010. 7. 15.한

VIII. 복임

□ 수탁기관 모집공고안 1부.

불임」

공

고

(안)

제천시 공고 2010 - 호

만남의 광장정보센터 문화공간 위탁운영자 모집공고

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제천시 청풍호 문화공간 위탁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
2010년 04 월 일

제 천 시 장**1. 위탁시설 개요**

- 위치 : 제천시 청풍면 교리 147번지
- 구 조 : 일반철골조 2층구조
- 위탁시설
 - 1층 107.9m²(32.6평) : 문화공간 88.1m²(영상실+창고) +화장실 19.8m²
 - 2층 113.25m²(34.2평) : 전시(휴게)실+화장실 +현관

* 시직접운영: 1층관광안내소(115.7m²), 임대(사용·허가) : 농특산품판매점(59.34m²)

2. 위탁관리조건

- 위탁기간 : 2010. 8. 1 ~ 2013. 7. 31(3년간)(※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)
- 수탁료 : 수익시설인 1층 공연문화공간 88.1m²에 한해 유료 위탁

3. 응모자격

- 만남의 광장 문화공간에서 상시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년 2회이상 자체기획행사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으로 제천시에 상주를 희망하는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4.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

- 기간(10일간) : 2010. 05. 17 ~ 2010. 05. 26. 매일 09:00 ~ 18:00까지(공휴일제외)
- 장소 : 제천시 문화관광과 관광팀(본관3층)
 - * 보내실곳 : (우)390-701 충북 제천시 천남동 12-2번지
- 신청서식 : 소정양식 1부(붙임 참조).
- 기타붙임서류 : 신청서식의 첨부서류 참조

5. 수탁자 결정 및 계약체결

- 결과통지 : 2009. 06. 10. 한 수탁기관 결정후 개별통지
- 결정방법 :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서류(신청서 및 사업계획서)를 근거로 문화예술활동에 따른 관광활성화 효과 등 수탁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탁자선정(문화공간 관리운영능력심사기준표에 의거 1000점 만점 중 최고 득점자로 선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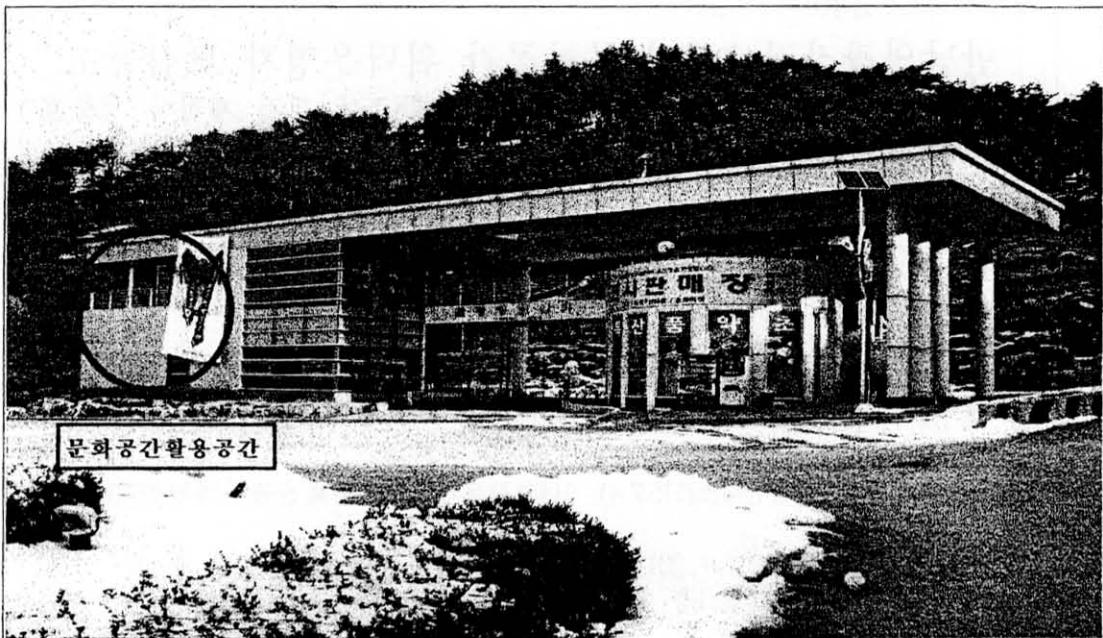
6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우편접수시 등록마감일 18:00까지 접수분에 한함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로 함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문화관광과 관광팀으로 문의바람
(☎ 043 - 641 - 514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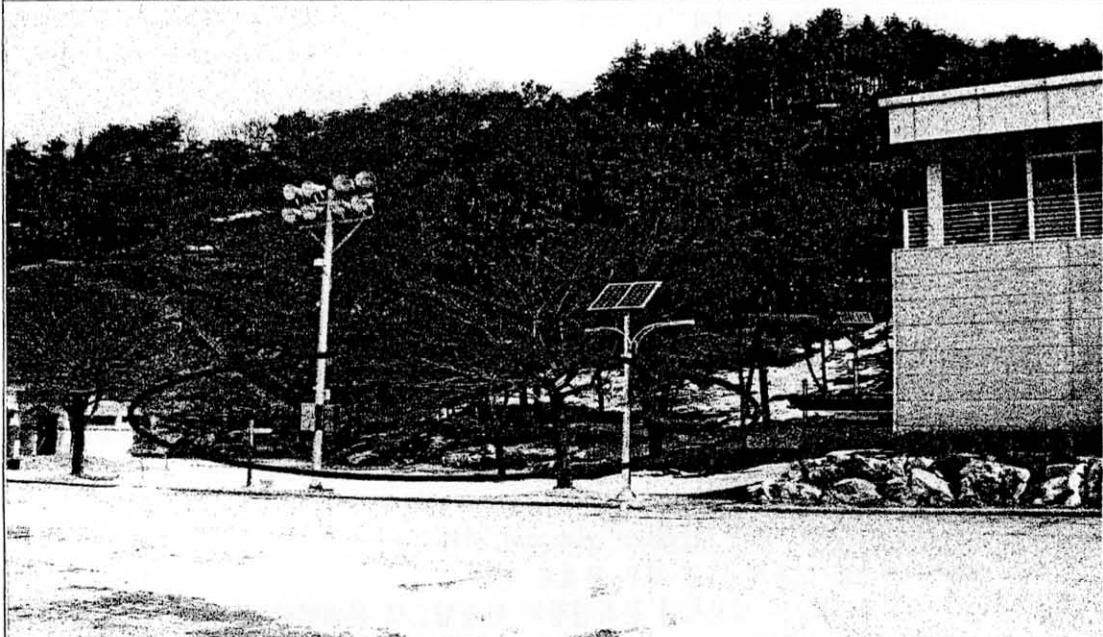
7. 붙임

- 신청서식 1부.

□ 사업대상지 전경



청풍 만남의 광장 관광정보센터 전경



청풍 만남의 광장 소공연장 예정지 전경

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2000. 1. 12 조례 제427호

개정 2007. 4. 13 조례 제777호

개정 2008. 1. 4 조례 제827호(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
여 제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
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
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개정 2007. 4. 13, 2008. 1. 4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"민간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
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- 2."수탁기관"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
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
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
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
할 수 있다.<개정 2007. 4. 13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, 종합적
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-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체사무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
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
로 한다.

-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, 제7조의 규정
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제7조(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) ①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
관선정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, 위원장
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및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
하고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<개정 2007. 4. 13>

-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
수 있다.

-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
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신설 2007. 4. 13>

제8조(수탁사무의 처리)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
수행하여야 한다.

- ②시장은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
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무처리의 지원)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

제10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①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협약체결 등)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

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액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지휘·감독)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

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3조(사무편람)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4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5조(재 위탁의 금지)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2007. 4. 13 조례 제77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8. 1. 4 조례 제827호,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)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(「 」)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(「 」)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.